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개정 2015.7.1),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개정 2012.12.21),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(개정 2009.2.6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「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」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삭제에 따른 대체규정 적용

- 개정사항 :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 제①항 제1호

(현 행)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

(개정안) “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

○ 인용된 상위법령 명칭 반영

- 개정사항 :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 제①항 제3호

(현 행)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,「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

(개정안)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

○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○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: 의견없음.(2015. 10.22 ~ 2015. 11.11.)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3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「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」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주요 개정 내용은

- 안 제7조 제1항 수수료의 감면 규정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“제5조”를 같은 법 “제2조 제2호”로,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변경하고

- 같은 항 제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및「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명칭이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및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「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」를 개정하는 조례로서

○ 법리 검토결과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성주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통보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명시된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여 꼭 필요한 조문만 남겨 조례를 간소화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문 간소화 (51조문 → 9조문)

○ 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 (안 제3조)

○ 자동차 이전·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(안 제4조)

○ 교부금전의 예탁 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국세징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 : 2015. 11. 5. ~ 2015. 11. 25 (20일간)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통보되어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주요 개정 내용은

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명시된 중복 규정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기존의 51개 조문을 기본안 9개 조문으로 간소화

- 안 제3조에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
-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 이전·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에 관한 사항
- 안 제5조에서는 고지서 등 서류송달 방법에 관한 사항
- 안 제6조에서는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「지방세기본법」및「국세징수법」등 관계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편의 증진 및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성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이 통보됨에 따라, 상위 법에서 명시된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여 꼭 필요한 조문만 남겨 조례를 간소화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문 간소화 (25조문 → 15조문)
○ 주민세 세율 (안 제5조 ~ 제9조)
○ 지방소득세 세율 (안 제10조)
○ 재산세 세율 등 (안 제11조 ~ 제14조)
○ 자동차세 세율 (안 제1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세법」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다. 기타사항
1) 입법예고 : 2015. 11. 5. ~ 2015. 11. 25 (20일간)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 역시 「성주군 군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과 같이 상위법인「지방세법」에서 명시된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필요한 조문만 남겨 조례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
○ 주요 개정 내용은
「지방세법」에 규정된 표준세율을 연계시켜 조문 간소화 25개 조문을 → 15개 조문으로 간소화

-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

- 안 제3조에서는 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

- 군세 5개 항목 중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4개 세목세율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상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연계되도록 개정
 •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주민세 세율
 •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소득세 세율
 •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재산세 세율과 납기를
 • 안 제15조에서는 자동차세 세율

○ 법리 검토결과 상위법인 「지방세법」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고,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